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6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이수진 · 김재원
서미화 · 한정애 · 이해식
윤준병 · 김태년 · 윤종균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목적의 허위정보,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영상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.

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관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제한·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

유통 행위에 관한 범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).

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3호 중 “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”를 “방송통신기자재등,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”로 한다.

제6조제20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3조 제5호,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
국가공무원

23의2. ~ 53. (생략)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
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
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
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
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

1. ~ 19. (생략)

20.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
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
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
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20의2. ~ 50. (생략)

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
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
정보 유통 행위-----

23의2. ~ 5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--

-----.

1. ~ 19. (현행과 같음)

20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
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
률」 제73조제5호, 제74조
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
정된 범죄

20의2. ~ 50. (현행과 같음)